



프랑스의 최저임금 현황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6월 총선이 사회당의 과반 확보 승리로 끝나면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아이로(국무총리 Jean-Marc Ayrault) 내각이 유지됐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아이로 정부는 정부 재량으로 최저임금 2%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1.4%의 물가상승률에 0.6%의 정부도움(Coup de pouce)¹⁾을 합산해서 내린 인상이었다. 이 결정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최저임금 전문가 집단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정부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인상에 반대했으나, 당초 4~5% 인상을 예상했던 노동조합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구매력에 비하면 지나치게 미비한 인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한편으론 프랑스 최저임금의 국제적 수준과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프랑스 최저임금 현황을 둘러보고, 최저임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정부도움'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2007년 이후 사르코지 정부하에서는 한 차례도 이 정부도움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재정손실의 가능성은 있다.

■ 프랑스 최저임금 제도

SMIC(스믹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이라 불리는 프랑스 최저임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9.4유로(한화로 약 1만 3,160원)²⁾이다. 이것은 SMIG(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 보장성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으로 1950년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물가지수만을 고려했던 당시 제도는 1930년 호황기³⁾에 평균 임금의 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구매력 저하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자 1970년도에 SMIC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구매력지수와 정부도움을 추가했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과 기초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SHBO : Salaire Horaire de Base Ouvrier, 면세 및 급여 혜택 이전의 육체노동자의 순수 임금 총액, 추가노동에 대한 임금 역시 제외)이 지닌 구매력지수 절반을 합산하고, 거기에 정부도움을 덧붙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2009년 발표된 시행령(Décret n° 2009-552)에 따라,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재평가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5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한 명을 대표로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매년 12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전국 단체교섭위원회(CNNC)⁴⁾에 보낸다. 그 후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최종 발표한다. 매년 1월 1일 자동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프랑스 최저임금 수준

유럽통계기구인 Eurostat에 따르면,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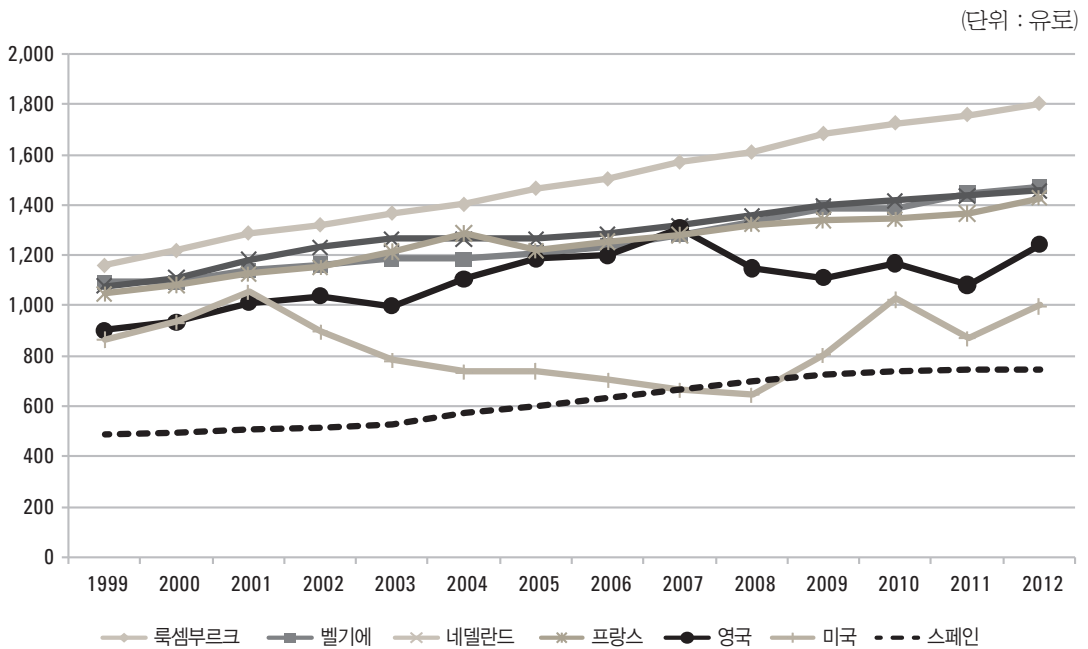
2) 원 유로 환율 1,400원 기준이며, 월급 총액은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1,425.67유로(약 199만 5천 원), 순 임금액은 1,118.36유로(156만 5,800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Les trente glorieuses : 장 포하스티에(Jean Faurastie)의 책 제목으로 처음 쓰인 이 표현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 석유파동 이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생산력증대, 저실업 등으로 경제적 호황을 누린 시기이다.

4) 이 위원회는 3명의 장관 및 장관급 대표(노동부, 농림부, 경제부)와 국가자문기구(Conseil d'État) 사회 분야 대표 1인과 동수의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동수의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그림 1). 하지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프랑스의 이웃나라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유럽 상당수의 국가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최저임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견해도 있다.⁵⁾ 200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최저임금이 중간치 소득의 48%인 데 반해 프랑스는 60%에 육박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그림 1]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변화



주: 매년 하반기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 유로로 환전한 금액임.
 자료: Eurostat.

5) Les Echos, "Le salaire minimum français se situe en haut de l'échelle européenne", 2012. 6. 22.

■ 최저임금 대상자 현황

2011년 1월 기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생활자의 비중은 10.6%로, 2005년 최고치인 16.3%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INSEE, 2011).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그 비중이 3배가량 높다. 2011년 전일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수령자의 비중은 7.3%인 데 반해, 시간제 노동자는 25.2%를 기록해, 비중의 차이가 약 3.5배가량으로 벌어졌다.

〈표 1〉 임금 생활자 중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6,3	15,1	12,9	13,9	10,6	9,8	10,6
시간제 근로	-	34,5	30,5	32,1	23,0	22,3	25,2

주: 비농업 분야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접고용(파견, Intérim)과 견습생은 제외된 것임.

자료: Dares(노동부 발간 자료), INSEE.

〈표 2〉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생활자 비중

(단위:%)

	대상자 수	비율	전일제	시간제
9인 이하	680,000	23,6	18,4	36,9
1인	111,000	32,2	26,0	42,2
2인	111,000	38,3	22,3	39,6
3~5인	270,000	24,0	18,8	37,4
6~9인	190,000	18,6	14,9	31,8
10인 이상	920,000	7,6	5,0	20,5
10~19인	160,000	11,4	8,9	21,4
20~49인	210,000	10,7	7,5	26,3
50~99인	140,000	11,3	70,0	29,6
100~249인	120,000	7,8	5,8	20,6
250~499인	70,000	6,5	4,5	19,5
500인 이상	220,000	4,4	2,3	15,5
전체	1,600,000	10,6	7,3	25,2

주: 이 수치는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Dares, enquêtes Acemo(조사기관).

기업규모별로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표 2). 특히 10인 미만의 기업 내에서 약 4명 중 한 명 꼴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인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대상자의 비중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에서의 이들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24.6%에서 23.6%). 오히려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이들의 비중은 1%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5%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최저임금 대상자의 비중 증가는 주로 무역 관련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약

<표 3> 기업업종별 최저임금 수령자 비중

(단위:%)

	전 체		시간제	
	2010	2011	2010	2011
광산업	2.0	1.9	ns	ns
제조업	5.5	6.3	17.1	18.1
에너지 생산 및 유통	0.5	0.5	0.8	1.1
수자원 생산 및 유통	3.0	3.5	7.0	11.2
건설업	7.8	7.9	17.7	17.8
무역,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업	13.5	15.4	26.0	31.5
운송 및 보관	4.2	2.3	8.3	6.0
숙박, 요식	37.6	35.1	58.6	58.1
정보통신	2.2	2.0	5.8	6.7
금융 및 보험	1.9	2.1	5.4	5.6
부동산	11.5	11.2	23.3	23.2
첨단 과학 기술 업종	6.8	8.4	22.6	29.6
행정 서비스업	11.2	13.4	13.4	16.1
교육(공기관 제외)	3.9	5.3	5.3	7.6
건강 관련업(공공병원 업무 제외)	13.6	16.4	18.4	24.3
예술 공연 분야	9.8	14.6	13.2	18.7
기타 서비스업	18.5	21.0	25.5	29.9
전체	9.8	10.6	22.3	25.2

주: 1) ns: 유효하지 않은 자료.

2) 범위: 견습생, 인턴직원, 파견직을 제외한 프랑스 전체 임금 생활자. 농업 분야, 행정, 건물주 조합, 공공 병원 업무, 가사일은 제외함.

자료: Dares, enquêtes Acemo(조사기관).

2%p), 이 분야는 주로 대기업들의 활동 영역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5인 이하의 직원이 종사하는 숙박 및 요식업에서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35.1%). 특히 이 업종에서 시간제 근무의 경우 6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전문직 및 비숙련 노동과 관련된 업종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인데, 시간제 노동자 중 대상자의 비중이 높은 것 역시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거시경제적 분석과 미시경제적 분석으로 나뉜다. 거시경제적인 접근에서는 주로 임금방정식을 사용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물가, 실업률 등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다(Heyer and Plane, 2012). Passeron and Romans(2002)는 약 3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1982년 이래 최저임금 1% 인상이 기초 월임금(상여금 및 추가노동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주 35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월급)의 0.11%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였다. 반면 Chauvin et al.(2002)는 이보다 더 높은 0.25의 탄력성에 도달했음을 보였다. 반면 실업률과 관련하여 Kramarz and Philippon(2001)은 1990년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1%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일자리 1.5%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논문은 최저임금과 실업률 문제에 있어 자주 언급되고 인용되는 논문이기도 하다.

한편 미시경제적 분석은, 임금의 수직적 구조 내에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접근한다(Heyer & Plane, 2012). 일반적인 예상대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상위 임금 그룹으로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경감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Goarant and Muller(2012)는 1년을 기준으로, “1%의 최저임금 인상이 근접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0.16%p의 상승을 가져오며, 최저임금의 1.1배 이상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최저임금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Rapport du Groupe d'experts, 2011) 역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체 임

금 상승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히 미비하고,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에 대한 미·거시적 분석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임금 순위별로 나뉜 10개 그룹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체적인 평균 임금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 즉 노동비용의 상승관계와 연결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논란은 정부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 전문가 그룹의 의장인 Paul Champsaur는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고용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현재 프랑스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 특히 정부 도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⁶⁾ 반면 프랑스 경제동향관측소(OFCE)의 경제학자 Henri Sterdyniak은 “Kramarz의 연구결과는 신뢰하지만, 정부도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007년 이후 지금까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움이 고용 파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피력했다.⁷⁾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프랑스에서, 이 논쟁은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그룹 구성원이기도 한 F. Kramarz의 앞서 언급한 이론에 따르면, 0.6%의 정부도움은 15,400개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 정부의 Baroin 경제부 장관 역시 최근 2%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3만~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⁸⁾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자료는 이러한 전망과 상반된 결론을 도출했다. Heyer and Plane(2012)에 따르면, 1%의 인상이 14,500개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지지만(F. Kramarz에 따르면 24,000개),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의 증가로(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최종적인 일자리 축소는 2,400여 개인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정부도움(0.6%)으로 인한 고용 감소의 폭은 약 1,400~1,500개이며, 정부의 재정적자 폭(1% 인상 시 GDP 0.01%p 증가)을 감안할 경우 1,900개에서 최대 2,8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최저임금 2%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의 수치는 약 8천여 개로 추정할 수 있다.

6) Le monde, “Augmenter le smic détruit des emplois”, 2012. 6. 22.

7) Le monde, “Pourquoi la hausse du smic coûte-t-elle à l'État?”, 2012. 6. 26.

8) Le monde, Selon l'OFCE, le “coup de pouce” du smic détruirait “très peu d'emplois”, 2012. 7. 17. 흥미로운 사실은, 사용자단체 Medef의 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이다.

■ 맺음말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구매력 보장과 국민경제발전 참여 유도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노동법전L3231-2).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나기에 — 적어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힘들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존재한다. 먼저 최저임금을,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별 소득 불균형의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견해(Goarant & Muller, 2012), 이와 반대로 거시경제적 균형을 위한 고용정책의 하나일 뿐, 소득 재분배 혹은 빈곤해소 기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Rapport du Groupe d'experts, 2011)와 같은 상충된 시각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생산해낸다.

요약하자면, 프랑스 최저임금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 노동자의 1/10 정도가 최저임금 생활자이며, 이들 중 40%는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과급효과, 특히 기초 월임금에 대한 영향을 다루는 상당수의 논문들은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파괴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의 결과는 수치로 볼 때, 최대 10배가량의 차이까지 벌어진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다룬 다수의 논문들이 10인 이상 기업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변수로 인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최저임금이 노동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고용 증감은 이외의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나타는 결과이기 때문에 “X%의 최저임금 인상=Y%의 고용감소(혹은 실업률 증가)”라는 도식이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지난 5년의 고용 사정을 감안해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대량의 고용 파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111**

참고문헌

- CHAUVIN, V., G. DUPONT, É. HEYER, M. PLANE and X. TIMBEAU(2002), «Le modèle France de l' OFCE. La nouvelle version : *e-mod.fr*», *Revue de l' OFCE*, N° 81, avril.
- DARES(2011), «les bénéficiaires de la revalorisation du smic au 1er janvier 2011», N° 074.
- HEYER, E. and M. PLANE(2012), «Quel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d' un coup de pouce au Smic?», *Les notes*, N° 22, OFCE.
- GOARANT, C. and L. MULLER(2012), «Les effets des hausses du Smic sur les salaires mensuels dans les entreprises de 10 salariés ou plus de 2006 à 2009», *document de travail de la DARES*.
- KOUBI, M. and B. LHOMMEAU(2007), «Les effets de diffusion des hausses du Smic dans les grilles salariales des entreprises de dix salariés ou plus sur la période 2000~2005», *Insee Références Les salaires en France*.
- KRAMARZ, F. and T. PHILIPPON(2001), «The Impact of Differential Payroll Tax Subsidies on Minimum Wage 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1), Elsevier, pp.115~146.
- PASSERON, V. and F. ROMANS(2002), «Prévoir l' évolution des salaires en France», *Note de conjoncture*, Insee.
- Rapport du Groupe d' experts(2011),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Décembre.
- Décret n° 2009-552 du 19 mai 2009 relatif au groupe d' experts sur 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prévu par l' article 24 de la loi n° 2008-1258 du 3 décembre 2008 en faveur des revenus du travail,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cidTexte=JORFTEXT000020635211>
- INSEE, Part des salariés rémunérés sur la base du SMIC en 2011(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f_id=NATTEF04112®_id=0).
- Le Monde, “Le smic augmenté de 2% au 1er juillet”, 2012. 6. 26,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2/06/26/le-smic-augmente-de-2-au-1er-juillet_1724522_823448.

html

- Le Monde, “Augmenter le smic détruit des emplois”, 2012. 6. 22,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2/06/22/augmenter-le-smic-detruit-des-emplois_1723377_3234.html
- Le Monde, “Pourquoi la hausse du smic coûte-t-elle à l’État?”, 2012. 6. 26,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2/06/26/cinq-questions-sur-la-hausse-du-smic_1724504_823448.html
- Le Monde, “Les mirages de la hausse du smic”, 2012. 6. 27.
- Le Monde, “Selon l’OFCE, le ‘coup de pouce’ du smic détruirait ‘très peu d’emplois’”, 2012. 7. 17,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2/07/17/selon-l-ofce-le-coup-de-pouce-du-smic-detruirait-tres-peu-d-emplois_1734813_3234.html
- Les Echos, “Le salaire minimum français se situe en haut de l’échelle européenne”, 2012. 6. 22, <http://www.lesechos.fr/economie-politique/france/dossier/0202096020358/0202134353859-le-salaire-minimum-francais-se-situe-en-haut-de-l-echelle-europeenne-336816.php>